

NO 경직! 라운드테이블

- 성교육을 말하다

일시: 2016년 8월 23일 (화) 오후 2시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주최: 포괄적성교육권보장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순서 및 목차

사회: 감이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기획 의도 및 당부의 말씀	1
발표_ 14:00~14:50	
김서화_여성주의저널 일다 <초딩아들, 영어보다 성교육> 연재	2
재재_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5
치리_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7
최규영_청량고등학교 보건교사	9
박현이_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11
류민희_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7
중간 휴식_ 14:50~15:00	
전체 토론_ 15:00~16:30	
질의응답 및 토론 내용 (속기/ 정리)	33

[NO 경직! 라운드테이블 - 성교육을 말하다]

성교육의 프레임과 키워드 전환이 필요하다

김서화_여성주의저널 일다 <초딩아들, 영어보다 성교육> 연재

* 기획 의도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성교육표준안으로 촉발된 '성교육' 이슈가 사그라질 줄 모른다. 시대를 역행한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제대로 된 성교육'에 대한 갈증을 더욱 심화시켰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성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회성에 그치거나, 다른 교과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들어있는 성관련 주제들에 역지로 짜 맞추어 교육시수를 채워 넣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성교육/성폭력/성차/성인식/성문화.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성(性)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데, 여전히 '어른'들은 성(性)이라는 말만 나오면 몸과 마음이 굳어진다. 아직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성(性)'이다.

성교육의 주제는 교육부도 여성가족부도 여성단체도 아니다. 교육의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 양육자(학부모), 교사, 성교육전문가,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이 '진짜로' 원하는 성교육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당부의 말씀

-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개인당 발언 시간은 (총) 3분으로 제한합니다.

- 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발언은 자제해주세요.

- 개인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니만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서 <초딩아들, 영어보다 성교육>이라는 칼럼을 썼던 김서화라고 합니다.

저는 칼럼을 쓰면서 성교육의 키워드를 '피해'에서 '가해'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라면 더욱더!

하지만 이 주장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아들부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군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라는 맥락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자녀 성교육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 밀치고 때릴 때, '거기 폭력이야 하지마.'라고 말하듯이 성적문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내 아이도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초등시기 성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유아기처럼 완전히 취약한 상태는 벗어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춘기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교육은 조금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기에 젠더감수성을 키워주지 않으면 이후의 본격적인 성교육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첫아이라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은 늘 제 생각을 훌쩍 뛰어넘더군요. 솔직히 제 아들 포함해 초등학생들 모두가 정말 '폭력적'이에요. 이 말은 나쁘다는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니 초등시기가 타인에게 가장 노골적이고도 무자비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이들은 처음 높은 강도의 사회화 과정에 빠져있는 상태이고, 다들 적극적 방어태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각자의 기질대로 폭력을 행사하죠.

어쨌든 초딩 시기란 '처음, 제대로' 타인과의 관계 맺기라는 어려운 숙제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힘들죠. 더군다나 초등아이들에게부터 경쟁 결과에 따른 과한 보상과 박탈이 철저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딩들의 거침은 아이의 성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의 행위에 '폭력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이전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진짜 폭력적 논리들이 있습니다. 초등아이들의 거침을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전에, 손쉽게 정리해버리려는 어른들의 욕망이 있죠.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대개 젠더편견이었습니다.

여자가 왜 그렇게 얌전치 못하니, 사내들은 서로 치고 박고 크는 거야, 사내 녀석이 겁이 많아 어디 쓰니, 저 남자가 너 좋아해서 괴롭히는 거야. 등등등 너무 많죠. 아이들의 거침은 성별에 따라 너무도 다른 해석들에 의해 새롭게 재편됩니다. 마치 각자의 성별 안에서만 자기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압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선이 아이들이 받은 첫 번째 성교육입니다. 그러니 성교육을 하려면 우선 뺄셈만 잘 해도 됩니다. 성적편견을 대물림 하는 대신, 그것들만 제거해도 되는 거죠. 정말이지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일상 속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 오늘의 애니메이션 한편, 게임 30분, 독서 한 권. 그 속에서 온갖 성적 인식을 배우고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삶 속에서 성을 배우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모든 것이 좌충우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믿을 만한 곳이 필요해요. 아직 아이잖아요.

신뢰 관계 안에서 타자를 만나는 즐거움과 아쉬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배우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곳에서 거부를 경험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들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애착형성을 강조 했나 봅니다. 교육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절로 공감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일을 누가, 어떤 성별이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회는 지나치게 차별적인 잣대를 적용합니다.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엄마역할이나 가정환경이라는 말들로 옮겨 적으면서 성차별 논리를 강화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지요. 아이들의 애착형성과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의 모든 인간들의 사회화 문제 자체가 정확히 젠더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하는 성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성교육의 책임자가 엄마뿐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현재 제가 엄마일 뿐이지요. 오히려 핵심은 모든 아이에게 일상 속에서 젠더 질문들을 자연스레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우면서, 믿을 만한 어른이 적어도 한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소재도 아이와 대화 소재가 됩니다. 왜 대부분의 주 양육자들은 죄다 여성들인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엄마, 할머니, 이모들만이 아이들의 양육에 왜 그토록 내몰리는지, 그런 데도 자식의 잘못들은 유독 엄마탓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 속 여성캐릭터들의 성적 대상화가 심하고,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남녀차별적 언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고, 학교 교과서나 좋다하는 아동도서에서마저 성역할을 당연시하고, 집에서 아빠는 누워있고 엄마는 퇴근 후에도 가사일에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차별적 인식을 안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성적편견을 가지는 것도 과연 엄마 탓일까요? 이런 덤터기도 없지요. 장담하건데 그 엄마는 오늘도 회사에서 성차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 엄마가 하는 성교육은 엄마역할이라는 집과는 무관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초등아이들과 할 수 있는 성교육적 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주세요. 적합한 주제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소재보다는 양육자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적 편견과 현실들을 그저 의논하면 되는 거죠. 가르친다기 보다 의논하기. 정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저는 어쩐지 조금 편해졌어요. 나도 정답을 찾아보자 싶어서 아이와 함께 부딪혀보는 것도 그 자체로 성교육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이 의견을 잘 들어주고 나도 같이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덜 부담스러워요.

이를 위해서도 저는 성교육의 키워드를 피해에서 가해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정말이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동등한 의견교환이라는 의미에서 대화요.

피해를 당할까 무서워 이런저런 식으로 삶을 제한하라는 말들은 잔소리죠. 그런데요, 아이/어른 이렇게 놓고 보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쪽은 당연히 약자인 아이들입니다. 어른이 가해할 가능성이 높죠. 간단합니다. 힘이 있는 쪽이니까요. 그런데 힘 있는 쪽이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한다는 것은 과연 좋은 교육일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 속에서 전하는 말들은 대

화의 형식을 띠더라도 대화일 수 없습니다. 변화도 없을 거예요. 힘 가진 쪽이 자신을 성찰할 태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키워드가 가해 쪽으로 옮겨지면, 어떤 관계의 조합이 되는 늘 힘을 더 가진 쪽이 먼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어른, 여성/남성, 비장애인/장애인, 등등 힘을 가진 자가 먼저 긴장하고 더 움츠러들어야 적어도 '대화'를 할 수 있지요.

양육자인 나부터 '나도 타인에게 성적 민폐를 끼칠 수도 있겠다, 내 속에 생각보다 성적편견이 정말 많구나.'하는 의심을 품게 되면 아이와의 성적 대화 자체가 쉬워집니다. 일단 아무 말이나 감히 던질 수가 없고, 내 삶부터 다시 볼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말투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오늘 수학문제집 5장 해봤어?"이렇게 묻는 태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애들이 더 재미있게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성교육을 난감해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데 있죠.

성적행위, 에로틱함, 성기 자체를 떠올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을 '단지' 그런 식으로만 사고하는 방식이 모든 문제의 잘못된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너무 일찍 그런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서 자신의 방임을 합리화하지요. 이것부터가 어른들의 가장 큰 성적편견일거예요. 성을 죄다 침대 위 일들로 한정하고 미디어에 흘러나오는 무수한 왜곡들에 대해 입을 다문 비겁함도 있죠. 사실은 그런 비겁함을 마주하기 싫었던 것이 민망함의 속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던질만한 젠더질문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것들이고 그게 바로 젠더감수성을 형성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시절에는 좋은 토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믿을 만한 양육자가 이런 대화들을 함께하면 좋다는 것이 하나의 전력이구요. 이런 인식들을 바탕으로 중고등학생이 되어 성적 행위시 에티켓에 대해 배운다면 성교육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서의 '성/폭력'

재재_한국여성성인전화 인권정책국 국장

1. 성교육에서의 '성'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 성교육에서 말하는 '성'은 무엇인가? 무엇이 '성적인 것'인지, 성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 되는지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며 그 자체가 권리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성교육은 성에 관한 당대의 주요한 인식을 반영하는 장이자 첨예한 담론 투쟁의 장이다.
- 한국여성성인전화를 비롯한 여성주의 반(여)성폭력 운동단체들은 반(여)성폭력 운동의 차원에서 성교육의 장에 참여해왔다. 운동적·시대적 요구나 제도적 구분 등에 따라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등으로 교육의 명칭이나 형식, 내용은 달라져왔으나, 교육의 목표나 방향에 있어 주요하게 관통하는 것은 성을 둘러싼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적 규범과 문화-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상화하는 남성중심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임으로써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수성과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과 함께 성교육 의무규정이 생기게 되었고, 성희롱예방교육(1999년), 성매매예방교육(2004년), 가정폭력예방교육(2006년), 성폭력예방교육(2010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4개의 예방교육을 '폭력예방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체계화, 통합화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흐름 속에서 성교육은 '폭력과 위험으로서의 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주요하게 구성되고 있다.
- 성교육에서 '폭력으로서의 성'으로 강조되어 구성되고 있는 제도적 흐름은 여성주의 반(여)성폭력 운동 안에서 구축해 온(구축하려고 한) 성교육과는 달리, '성폭력'에 대한 협소하고 왜곡된 담론과 정책과 결부되며 성평등과 인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2. 제도화된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문제적' 흐름들

-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성폭력을 '정조의 침해'로 보았던 기존의 법을 비판하면서 여성주의 운동이 성폭력의 보호법적으로 제안했던 개념이다. 성을 누구나 마땅히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로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이 발휘되기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성과 피해 등의 성을 말할 때 '폭력', '위험'과 주요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주체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과 권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제도화된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은 (교육부의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이 전형적인 표본)

-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그 권리가 평등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보다는 성적 폭력과 위험만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십대의 성을 '일탈'이며 '위험'이고, 그리하여 국가/성인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하고, 이성에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기 하는데) 들어가기 전까지 유보/금지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 성교육은 이성애-결혼-출산-양육으로 환원되는 성적 욕망과 실천이 '올바른' 성이라는 획일적인 가치를 주입하고 훈육하는 국가 통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국가위기 담론과 적극적으로 교유하고 있다.

- '양성평등'에 입각한 성교육을 표방하지만,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오히려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다양한 성별정체성·성적지향에 대한 교육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 성폭력은 일상적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 보다 범죄로서 사법적 개념과 맥락을 중심으로 그 피해와 처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위험한 사람을 조심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말라"는 식의 매뉴얼화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유통되며 피하고 거부해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시키고 가해자를 '괴물'로 만든다. (아동/여성)피해자(성인/남성)가해자 구도 등 성폭력 각본에 맞지 않는 폭력은 비가시화 된다.

3.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제도적 강화는 이슈화된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써 진행되어 왔다.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성폭력을 멈추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이란,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그 발생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토론하는데 집중된 교육이어야 한다.

○ 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은 성폭력 피·가해자로 상정되는 개인 주체들을 규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적 주체로서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성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알고 소통할 수 있고, 일상의 관계와 문화 안에서 선택, 조율, 대응을 할 수 있는-을 기를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을 둘러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나이, 장애,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위치와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권력에 대한 성찰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 성교육이 기존의 차별과 폭력을 정상화하는 몸/성/일상/관계의 균열을 내는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성교육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우리의 인식과 문화, 현실에 뿌리내릴 수 없으며, 성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의 효과는 담보될 수 없다.

십대가 경험한 / 원하는 성교육은?

치리_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사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정확히 언제부터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성교육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용이 항상 똑같았던 기억이 난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성교육의 기억은 초등학교 중학년 즈음이었다.

나는 중학교까지는 공학을 다녔다. 그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성교육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두 반을 묶어 남자/여자로 나눈 뒤에, 서로 다른 성별의 교사가 들어가 교육을 진행했다. 남자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내가 남성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더 구린 이야기가 나오든지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그것이 어쨌든, 내가 있던 여자 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항상 비슷했다. 지나치게 생물학적인 이야기들과, '사춘기' 남성들의 성욕이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한 이야기, 임신이 얼마나 승고한 일이고, 무계획적으로 임신하면 인생이 어떻게 구렁텅이로 흘러가는 지에 대한 이야기들.

솔직히 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 지도 잘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교육 시간만 되면 고장 난 라디오마냥 똑같이 반복되어 흘러나왔다. 너희에게도 성욕은 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며, 남자들은 '위험'하다. 섹스와 피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틀에 박혀 있었고, 아주 안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성교육 안에서 '피임'에 대한 이야기는 여자아이들의 순결성을 해치는 위험한 '섹스'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되었다.

콘돔 등의 피임용품은 '즐겁고 안전한 섹스'의 준비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마주칠 때 요구라도 해야 하는 물건'이었다. 섹스의 방법 따위는 등장할 수조차 없었다. 학교 성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안에서 '섹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았다. 섹스 얘기라고는 하나 없는 성교육이라니, 솔직히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 않나?

학교 성교육엔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은 죄다 빠져있다. 당장 '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아무 곳에도 없다.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은 학교에서 '없는 존재'다. 당연히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나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교육이 성평등적인 것도 아니다. 아니, 애초에 성평등적이었다면, 앞의 말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성교육 안에서 섹스는 어떤 큰 죄처럼 보인다. 성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순수해야 함'을

강요받는 느낌이다. 물론 성욕을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배가 고프다고 마음대로 어디에서나 무언가를 먹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그게 잘못되어서는 아니다.

또 학교 성교육은 지나치게 생물학적이다. 도대체 생물시간에 한 번 배우면 족할 내용을 왜 매번 끌어오는지 모르겠다. 우리 몸과 대자연의 신비를 풀어나가는 건 과학의 영역이 아닐까?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과정을 알려준다면 정작 알려주는 것은 이런 거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되면, 수정란이 되어 나팔관에 착상하고, 며칠이 지나면 몇 개의 세포로 분열하고 어찌고 하는. 이걸 도대체 왜 '성교육'에서 들어야 하는가? 성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건 비이성적인 모성신화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하는 '비계획적 임신은 안 돼요~'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든 모체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제발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아동청소년은 분명히 성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이에 의해 규제될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필요한 정보라곤 딱 다 감춰놓고 '너희도 성욕이 있는 걸 알지만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라는 말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예의 없는 말일까. 청소년에게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언제까지 순결하고 깨끗한 청소년 신화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알려줄 셈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 그 어려움과 가능성

최규영_청량고등학교 보건교사

2016년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

첫째 성교육이 독립된 교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과가 아니기에 교육에 필요한 시수 확보가 늘 어렵고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며, 교육내용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교육은 다른 교과에 얹혀간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서 보건교사가 실시하거나 관련교과(생물, 윤리, 역사, 체육, 가정)에서 학습내용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교과교사가 성교육을 하도록 운영된다. 학교마다 학년 당 15시간 성교육을 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실제 교실수업에서 15시간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도 독립교과가 아니기에 성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 아니라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긴다. 열정적인 교사가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학습내용을 준비해도 학생들이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성교육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둘째 현재 성교육의 대부분을 전담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학생수가 1000명이 넘어도 1500명이 넘어도 보건교사는 한 학교에 한명 뿐이며 업무부담으로 인해 늘 허덕이며 수업을 하고 있다. 응급상황 대처 못지않게 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성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다. 교육부 지침의 학습지도안대로 교육을 하면 2016년 현재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든다.

일부 열정적인 교사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성교육이 점점 더 학생들에게 호응을 잃어가고 있다.

열악한 속사정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성교육을 원한다. 다만 기대에 못 미칠 뿐.

올해 학교를 옮긴 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2학년 대상으로 한 학기씩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첫 시간에 보건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을 물어봤더니 80% 이상의 학생들이 성교육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은 “다양한 피임방법을 실제적으로 알려 달라, 임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학교 성교육은 너무 피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얘기가 많다. 남학생들은 생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다.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 이었다.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해달라는 학생들의 냉정하고 신랄한 비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 대다수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교육이 또 있을까?**

성교육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 포르노가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남학생도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못 읽어서 애태우고, 헤어지면서 가슴아파하는 것은 포르노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다.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포르노와 SNS상에서 왜곡된 성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많이 걱정스럽고 심각한 일이지만 실제 연애를 해 보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된다.

아직 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고 이것이 실낱같은 희망이다.

성교육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차원에서 성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야 한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포르노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의사소통, 몸 이미지, 연애, 헤어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젠더의 문제, 부모 되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지한 태도로 논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진정한 학교 성교육은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인간교육이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현장 사례를 통해서 본 성교육 대안 찾기

박현이_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1. 성교육의 현주소

현재 학교 성교육은 양성평등, 성폭력, 성매매 등의 영역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미비하다. 때문에 학교 성교육 운영은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천차만별이다. 또한 기존 학교 성교육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지식을 단편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쳐 성에 대한 건강한 성태도 및 성가치관 정립, 평화로운 소통 및 관계 맺기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5년부터 연간 15시간 성교육을 배정했지만 전문 인력도 없고 수업시간도 부족하다고 현장 교사들은 말한다.

지역사회 성교육 현장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국 시도에 50여개가 설치되어 체험형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교수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1회성 교육 요청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단발성 교육이 가지는 문제는 학교와 청소년성문화센터 모두의 고민으로 남아있다.

2. 10대들의 일상이 된 포르노

학교에서는 단편적인 성지식 전달 수준의 1회성 성교육을 제공하고 부모도 불편해서 쉬쉬하는 사이, 십대들의 언어와 성의식은 포르노에 접령당하고 있다. 사춘기 변화가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급증하면서 야한 성표현물 등을 통해 성에 입문하는 시기이다.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성 관련 내용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다보니 십대들은 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 아하! 체험형 성교육에서 나온 사례***

<초등 2 남>

- 교육 중 어린이들이 기모찌, 기무치, 변태 등의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서로 놀리거나 장난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었다. 같은 학교의 고학년, 친 누나등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초등 4 남>

"게임에서 '스스할 분 구한다'는 것을 보고 애들이 '시웃시웃'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라고 이야기...시웃시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했고, 대부분 성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초등 6 남>

- 야동에서 본 단어 '앙 기모찌'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린이가 있었다. 교육 중 성기를 지칭하는 말로 '쫓'이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초등 5 남>

주변 친구들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장난을 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였다.

문제는 매체에 비치는 성표현물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대학 남학생들의 카톡 성희롱 사건이나 여성혐오 사안 등에서 보여주듯이 십대들은 인터넷이나 SNS, 친구를 통해 끊임없이 왜곡된 성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이다. 잘못된 정보 및 성의식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응할 수 있는 성교육을 일상 생활 문화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성찰 없는 무분별한 성적 대상화로 인한 또래간 성폭력의 확산

10대들의 성표현물 접촉과 성적 행위는 많아졌는데 주체적 의식은 떨어진다. 최근의 청소년 성문화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성을 놀이나 장난처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면서 청소년 또래들 사이에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담패설, 외모놀리기 외에도 '일부러 신체부위 만지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성 간 성기를 만지거나 치는 등의 성적 장난들이 증가하고 있다(2010년, 2013년 아하!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는 몰카 촬영 및 배포, SNS등을 활용한 벗은 몸에 대한 사진 혹은 동영상의 교환 및 유포 등이다. 주로 중학교 남학생에게 발견되던 또래간 성폭력 현상이, 최근 초등학교 남학생에게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아하! 체험형 성교육에서 나온 사례***

<초등 남녀>

- 여학생끼리 외모 비하나 뒷담화
- 바지 벗기는 모습을 사진 찍어 카톡에 올리기
- 여자처럼 애기한다고 계속 게이라고 놀리다가 결국 폭력이 오고 감
- 남학생이 먼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여학생이 가슴사진을 전송하여 유포됨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으로 사귀는 커플이 자신들의 스킨십하는 장면을 학교 교사 및 학생들이 함께 연결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또래들 사이에 카톡을 통해 서로의 몸 사진을 보내거나 요구하는 사례, 헤어진 애인이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을 유포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 같은 상황은 십대들이 성적인 것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공개된 놀이로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동시에 성적 표현이 점점 자연화, 노골화되고 있으며 주변의 누구나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성적 관계 맺음의 방식이 상호적인 방식이 아닌 일방적 성적 대상화의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벗은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하는 행동은, 실제로 그것이 재미와 흥미를 위한 놀이거리라고 여기지만, 그러한 인식 속에 인격을 가진 사람,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서의 특정 개인의 몸과 성이라는 개념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십대에게 상호주관적이고 사적인 장소로서의 몸과 성에 대한 주인 인식을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4. 친밀한 관계 맺기가 아닌 성행위 중심적인 연애

십대들은 대중매체, 포르노 등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성적인 존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성적 실천을 하고 있다. 아하!청소년문화연구소(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의하면 십대들의 연애 경험 비율이 50%가 넘고 스킨십의 정도가 더욱 개방적으로 변하는 추세다. 성교육 과정에서 십대들의 스킨십 진도에 대한 갈등을 담은 쪽지 질문, 성행위와 임신 상담 사례를 접하면서 이전보다 성이 많이 개방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물론 10대들이 배우고 싶은 성교육 내용으로 '연애와 성관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다.

초등학생들도 연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하!센터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연애를 성교육 주제로 다루고 있다. 고백을 받은 경험, 고백을 거절했던 경험,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했던 경험 등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고백하는 방법 중 쪽팔려 게임으로 고백하기, 만우절날 고백하기의 방법들이 나왔다. 이런 게임을 통해 고백하는 이유는, 거절당했을 때 장난이나 게임이었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친구들과 게임(왕게임, 진실게임, 당연하지, 뽀야)을 통해 끊임없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고 이야기했다가 놀림과 소문 등으로 힘들었던 고민들도 많이 토로한다. 초등 어린이들이 이성과 사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성에 대한 관심을 과도하게 연애 일변도로 몰아감으로써 자연스러운 친구 관계 맺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연애와 성'에 대한 관심이 '스킨십 진도'와 '성기중심적인 섹스'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모습을 보인다. 소비자본주의와 대중매체, 사이버 공간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성표현물의 영향 속에서 10대들은 정작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성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계에 대한 소통 능력이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성경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타인과 관계 맺을 때는 충분한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과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는 대화기술을 알도록 해야한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스킨십 진도를 나갈 때는 섬세하고 예의바르게 하는 소통과 감수성 키우기 훈련이 필요하다.

*** 아하! 체험형 성교육에서 나온 사례***

<초등 6 남>

- 연애 관련 단어로 고백, 데이트, 스킨십을 선택해서 마인드맵을 진행함
예시) 고백할 때 듣고 싶은말 : 오빠 나랑 섹스할래?, 라면먹고갈래? / 고백을 하면 좋은 점 : 성행위 가능 / 고백을 할 때 어려운점 : 성행위 권유 / 성관계 관련키워드: 성관계-피임-콘돔-1,000원-너무비싸-피임안함-임신

<고 1,2 남>

- 주로 '야동 속 성관계 장면, 여성의 오르가즘, 체위, 애무방법, 여성의 자위방법, 자위, 임신 확률, 여성의 성욕, 사정지연방법' 등의 질문이 많음. 특히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높아 '성관계를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 잘 하는 방법' 등의 질문이 많았다.
-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강간'이라는 대답이 다수학급에서 나왔다.

5. 성적 주제인 10대를 임파워링할 수 있는 성교육과 정책 마련 필요

현재 10대들이 접하는 대중매체와 사이버 공간에서는 연애와 성적 행위가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정보나 지식은 거의 없다. 연애에 대한 기대와 사귀는 경험 과정에서 궁금궁금이 생긴 10대는 '연애와 성행위'에 대해 묻고 떠들기를 원한다. 왜냐면 우리의 교육과정 안에 연애와 성적 접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10대들과 '연애와 성'에 대해 편하고 진지하게,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10대 성교육 쪽지 질문 사례>

- 남자가 뭘해줘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나요?
- 사랑이 뭐가요? 진도 나가는 게 사랑인가요?
- 여자들이 싫다고 그럴 때 튕기는 건지 진짜 싫은건지 구별하는 방법은요?
- 꼭 스킨십을 해야만 연인관계가 오래 유지될까요?
- 청소년 연인끼리 어디까지 허락해야 할까요?
-성관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섹스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연애의 보편화와 스킨십의 증가 등 현재 십대 성문화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10대들의 연애와 교제를 '하지 말라'는 통제가 아닌 적극적인 정보제공, 교육 및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접촉 행위를 금지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성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10대들이 자신의 성을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적주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성을 누리면서 성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십대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다양한 욕망을 협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한다. 더불어 십대를 위한 성교육과 관련 서비스(연애와 소통, 성 건강, 피임, 성관계 준비와 책임, 십대임신과 양육 등)를 다양화하고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성적존재인 10대들이 스스로의 성을 말하고 의미화하게 해야 한다. 성적 권리를 만들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10대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게 가능해질 때 10대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성문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로서의 성교육

류민희¹⁾·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세부 목차>

- I. 들어가며
- II. 규범적 근거
 - 1. 국내법
 - 1) 헌법
 - 2) 기타 법령
 - 2. 국제인권법
 - 1) 각종 규약
 - 2) 최근 권고들
- III. 국제기준의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과 구체적 가이드라인
- IV. 결론

I. 들어가며

헌법적으로 볼 때, 행복추구권, 성평등, 교육권과 보건권에 기반하여 성교육에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볼 때, 한국은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의) 교육과 보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인권조약을 유보 없이 승인한 국가이며 이를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²⁾ 각종 규약에서는 최종 권고, 일반 논평 등을 통하여 성교육, 특히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1) minhee.ryu@hopeandlaw.org

2) 헌재 1991. 7. 22. 89헌가106(“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주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 성소수자 포함적인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연령의 아동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교육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II. 규범적 근거

1. 국내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기타 법령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 오용과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제인권법

1) 각종 규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한국이 가입한 주요 인권조약³⁾과 관련 국제관습법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 작용(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을 해석하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조약위원회 의 일반 논평, 개별 국가 보고서의 최종 권고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권리의 보편적이고 현재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포괄적 성교육의 권리와 국가적 의무에 대해 주지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은 제13조 교육권⁴⁾ 조항 등에 기반하여 국가별 최종권고 등을 통해 포괄적 성

3) 한국의 주요 인권조약 가입일과 발효일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1990.4.10. 가입 1990.7.10 발효, 제1선택의정서 1990.4.10. 가입 1990.7.10 발효, 제2선택의정서(미가입),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1990.4.10. 가입 1990.7.10 발효, ③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12.5. 가입 1979.1.4. 발효, ④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12.27. 가입 1985.1.26. 발효, 선택의정서 2006.10.18. 가입 2007.1.18 발효, ⑤ 고문방지협약 1995.1.9. 가입 1995.2.8. 발효, 선택의정서(미가입) ⑥ 아동권리협약 1991.11.20. 가입 1991.12.20. 발효,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선택의정서 2004.9.24. 가입 2004.10.24 발효,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선택의정서 2004.9.24. 가입 2004.10.24. 발표 ⑦ 장애인권리협약 2008.12.11. 가입 2009.1.10 발효.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며⁵⁾, 자유권 규약 또한 여성 권리 조항 등에 기반하여 포괄적 성교육을 권고하고 있다.⁶⁾ 여성차별철폐협약⁷⁾, 아동권리협약⁸⁾도 그러하다. 한편 2016년 3월 4일 유엔

4)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와#8228;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들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See Comm. Econ., Soc. & Cultural Rts., Concluding Observations: Bosnia and Herzegovina, " 32, U.N. Doc. E/C.12/BIH/CO/2 (2013)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ise awareness of contraceptive methods, with age appropria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the school curricula, with the aim of preventing early pregnanc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Peru, " 23, U.N. Doc. E/C.12/PER/Q/2-4(2012) ("Promot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in the regular education curriculum targeted at adolescent girls and boys."); Concluding Observations: Argentina, " 22, U.N. Doc. E/C.12/ARG/CO/3 (2011)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all provinces and guarantee affordable access for everyone, especially adolescents, to comprehensiv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and services ..."); Moldova, " 27, U.N. Doc. E/C.12/MDA/CO/2 (201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 special cours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 has been withdrawn from the curriculum at public schools ...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eproductive Health Strategy 2005-2015 include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on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Colombia, " 26, U.N. Doc. E/C.12/COL/CO/5 (20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sexual and reproductive education in schools."); Mauritius, " 25, U.N. Doc. E/C.12/MUS/CO/4 (20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mainstream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in schools."); Kazakhstan, " 33, U.N.Doc. E/C.12/KAZ/CO/1 (2010) ("The Committee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e lack of comprehensiv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programmes for girls and boys in the national school curricula that provide them with objectiv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medical and education standard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programmes in schools ...").

6) Hum. Rts. Comm., Concluding Observations: Poland, " 9, U.N. Doc. CCPR/CO/82/POL (2004) ("Include accurate and objective sexual education in your curricula."); 59 Hum. Rts. Comm., Concluding Observations: Dominican Republic, " 15, U.N. Doc.

CCPR/C/DOM/CO/5 (2012) ("The State party should increase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programs, both formal (at schools and colleges) and informal (in the mass media), on the importance of using contraceptives and the right to reproductive health."); Guatemala, U.N.Doc. CCPR/C/GTM/Co/3 (2012) ("The State party should increase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programs, both formal (at schools and colleges) and informal (in the mass media), on the importance of using contraceptives and the right to reproductive health."); Djibouti, " 9, U.N. Doc. CCPR/C/DJI/CO/1 (2013) ("The State party should amend its legislation on abortion and make provision for additional exceptions, including access to abortion services in cases of pregnancy resulting from rape or incest. The State party should also strengthen its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programmes on contraceptive methods,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

7) Comm. Elim. Discrim.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Benin, " 27, U.N. Doc. CEDAW/C/BEN/CO/4 (2013) ("Integrate age-appropria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into school curricula, including comprehensive sex education for adolescent girls and boys covering responsible sexual behaviour and the prevention of early pregnancie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cluding HIV/AIDS ..."); Andorra, " 27, U.N. Doc. CEDAW/C/AND/CO/2-3 (2013) ("Introduce age-appropria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school curricula, including on responsible sexual behavior ..."); Cambodia, " 33, CEDAW/C/KHM/CO/4-5 (2013) ("Intensify age-appropriate education in schools on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gender relations and responsible sexual behaviour, in order to combat teenage pregnancies ..."); Algeria, " 41, U.N. Doc. CEDAW/C/DZA/CO/3-4 (2012) ("The Committee urges that the State party ... include more comprehensiv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public school curricula."); Congo, " 36(e), U.N. Doc. CEDAW/C/COG/CO/6 (2012) ("Widely promo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by: (i) Undertaking large-scale awarenessraising campaigns for the population in general with special attention to early pregnancy and the importance of using contraceptives for family planning and the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cluding HIV/AIDS; (ii) Integrating effective and age-appropria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t all school levels and incorporating it into school curricula ..."); Zimbabwe, " 34(d), U.N. Doc. CEDAW/C/ZWE/CO/2-5 (2012) ("Widely promo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argeting adolescent girls and boys, with special attention to early pregnancy and the control of STIs, including HIV/AIDS ..."); Lithuania " 81, U.N. Doc. CEDAW/C/LTU/CO/4 (2008)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 provide mandatory sexual education in schools ..."); Republic of Moldova, " 31, U.N. Doc. CEDAW/C/MDA/CO/3 (2006) ("The Committee ...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sex education systematically in schools, including vocational and training schools.");

8) Comm. Rts.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 70, U.N. Doc. CRC/C/CHN/CO/3-4 (2013) ("...ensure the widespread provision of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services and psychological support; improve awareness and knowledge, including by providing sexual- and reproductive-health education in schools ..."); Tuvalu, " 52 (2013) ("Strengthen and widen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in schools for both girls and boys ..."); Cuba, " 46, U.N. Doc. CRC/C/CUB/CO/2 (201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its awareness raising programmes, including campaign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school and out of school, with a view to providing them with access to safe contraception methods."); Hungary, " 44, U.N. Doc. CRC/C/HUN/CO/2 (200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strengthen its efforts to promote adolescent health, includ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in schools, and to introduce school health services, including youth-sensitive and confidential counseling and care."); Portugal, " 39, U.N. Doc. CRC/C/15/Add.162 (200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steps to address adolescent health concerns, including teenage pregnancy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rough, inter alia, sex education, including about birth control measures such as the use of condoms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12조 “건강권”⁹⁾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¹⁰⁾에서 성교육의 권리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였다.

정보의 접근성

18. 정보 접근가능성은 성적 및 재생산 건강 문제 일반과 관련되는 정보 및 생각들을 찾고, 받고, 유효할 권리를 포함하며, 개인들이 자신의 특정 건강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청소년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 및 집단은 모성건강, 피임제, 가족계획, 성병 및 HIV 예방, 안전한 낙태와 낙태 후 돌봄, 불임 및 불임치료, 재생산 관련 암 등 성적 및 재생산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개인 및 공동체의 수요 (예: 연령, 성별, 언어능력, 교육수준, 장애,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간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은 사적인 건강 기록과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

28. 여성 인권 및 성평등의 법적 및 실제적 실현은 성적 및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의 차별적인 법, 정책, 관습을 폐지 또는 개혁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성들의 종합적인 성적 및 재생산 의료 서비스, 재화, 교육, 정보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모성 사망과 질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벽오지역을 포함하여 응급 산과치료 및 훈련된 출산도우미,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예방이 필요하다. 원치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예방은 국가가 구매가능하고, 안전한, 효과적인 피임제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하고, 제한적인 낙태 관련 법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 훈련 등의 방법을 통한 안전한 낙태 서비스 및 양질의 낙태후 보전에 대한 여성 및 여아들의 접근을 보장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존중 하는 법적 및 정책적 방안의 채택을 필요로 한다.

63. 추가적으로, 국가가 성적 및 재생산 건강권 향유를 막는 법적·절차적·현실적·사회적 장벽을 철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성적 및 재생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정중하고 반차별적인 태도로 대우할 것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행 의무의 위반이 발생한다. 이행의무의 위반은 또한 국가가 성적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언어와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와, 모든 교육기관이 편향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연령에 적합한, 포괄적 성교육을 필수교육과

9)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분야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10)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E/C.12/GC/22, 인터넷 홈페이지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E/C.12/GC/22&Lang=en

정에 포함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한편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2010년 보고서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7/23/2010)¹¹⁾에 따르면 특히 16, 20, 23번 항목에서 “개인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성을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존중하면서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의 필요와 권리에 대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교육 과정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 반에 걸쳐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에 관한 권리의 한 부분이다. 포괄적이기 위해서는 성교육은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이는 누구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16. Similarly,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s that pleasure in and enjoyment of sexuality, in the context of respect for others, should be one of the goals of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abolishing guilt feelings about eroticism that restrict sexuality to the mere reproductive function.

20. Thus, the right to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is part of the right of persons to human rights education.

23. In order to be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must pay special attention to diversity,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deal with his or her own sexuality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2) 최근 한국에 대한 권고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8/1/2011 7차)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¹²⁾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교육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더욱 포괄적이고,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29.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n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e 10-hour compulsory course on sexual education and that it consider introducing a more comprehensive, age-appropriate programm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both girls and boys as a regular part of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11) http://www.right-to-education.org/sites/right-to-education.org/files/resource-attachments/UNSR_Sexual_Education_2010.pdf

12) http://www.refworld.org/publisher.CEDAW.CONCOBSERVATIONS_4eeb46b2.0.html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에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d) The lack of any mention of homosexuality or sexual minorities in the new sex education guidelines:
 (d)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 개정안
 15. The State party should ... develop sexual education programs that provide students with comprehensive, accurate and age-appropriate information regarding sexuality and diverse gender identities ...
 대한민국 정부는 ..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III. 국제기준의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과 구체적 가이드라인

1. 개관

성교육이 등장한 초기인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몇 개의 성교육 출판물이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위생'이라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결국 학교에서의 공적인 성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대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대부분의 인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병사를 비롯한 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었는데 성매개 감염으로 인한 보건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좋지 않은 공중보건적 결과인, HIV를 비롯한 성매개 감염, 원치 않는 10대 임신, 성범죄의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공적인 형태의 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제는 아동·청소년·여성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었다.

공적인 형태의 성교육 없이는 청소년은 또래집단, 미디어, 인터넷 등으로부터 부정확한 정보와 혼선을 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보건적 결과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결혼까지 금욕' 성교육(AOUM, Abstinence Only Until Marriage)은 문제 상황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¹³⁾ 금욕과 함께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섹스 권장하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포괄적 성교육(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은 '결혼까지 금욕AOUM'

13) Santelli, J., Ott, M. A., Lyon, M., Rogers, J., Summers, D., & Schleifer, R. (2006). Abstinence and abstinence-only education: a review of US policies and program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1), 72-81.

성교육이 이루어져 있던 결과인 첫 번째 섹스의 지연, 피임기구 사용 등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성교육이 '성행동'을 촉진한다는 허구는 깨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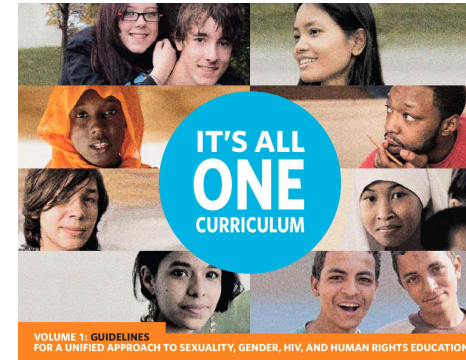


그림 1.
It's All One Curriculum: Guidelines and Activities for a Unified Approach to Sexuality, Gender, HIV, and Human Rights Education
 하나의 커리큘럼 : 섹슈얼리티, 젠더, HIV, 인권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활동

한편 성교육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넘어 '젠더와 권리'를 포함한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에 있다. 젠더 관점의 포함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 성적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한 권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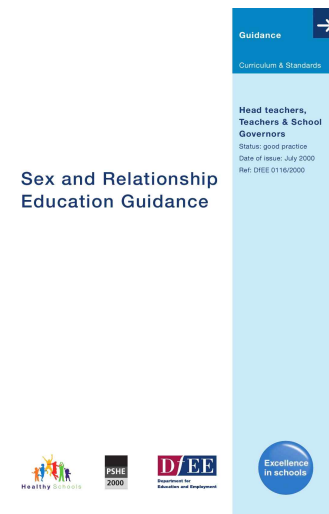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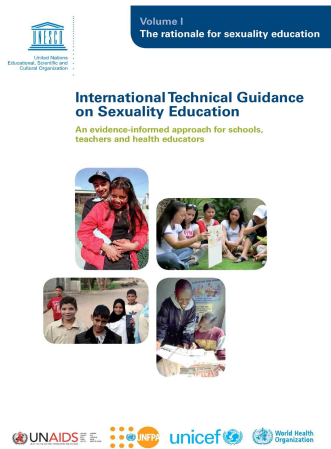
그림 4.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SRE)으로 실시되는 국가차원 성교육 지도안: 태도 및 가치관, 인격적, 사회적 기술, 지식과 이해에 가르치게 된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유엔인구기금(UNFRA)의 정의

학교 안에서는 밖에서든, 권리에 기반하고 젠더중심적인 접근의 성교육. 아동과 청년들에게 그들의 감정적 사회적 발전의 맥락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게 하도록 목표를 삼는 커리큘럼 중심의 교육. 원치 않는 임신과 성매개 감염(STIs)의 예방 중심을 넘어서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에 대한 전체론적인 비전을 포용함으로써 CSE는 ①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함 ② 긍정적 가치와 태도를 탐색하고 배양함 ③ 삶의 기술을 개발시킴

2.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유네스코¹⁴⁾의 정의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은 ‘성과 관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사실적인,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 관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나이에 맞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접근 방법 an age-appropriate, culturally relevant approach to teaching about sex and relationships by providing scientifically accurate, realistic, non-judgemental information’ 라고 정의된다.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질문 중 ‘성교육이 청소년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린 아동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혼란 이해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은 연령적합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성

14)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 INFORMED APPROACH TO EFFECTIVE SEX, RELATIONSHIPS AND HIV/STI EDUCATION 2 n.1 (2009) [이하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립되었으며 국가와 커뮤니티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성교육은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관계를 포함한다. 아동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자신의 신체, 관계,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 기술을 어린 나이부터 익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교육은, 신체 부위의 정확한 이름을 배우고 인간 생식의 원칙에 대해 이해하고,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안전에 대해 배우며, 자신감을 기르는 등의, 기반을 단단히 닦아준다. 이러한 기반은 아동의 나이와 발달에 대응해서 단계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연령집단을 5세부터 8세(레벨 1), 9세부터 12세(레벨 2), 12세부터 15세(레벨 3), 15세부터 18세 이상(레벨 4)로 나누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주제와 학습 목표는 학습 과정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① 정보 : 성교육을 포함한 인간의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성장과 발달, 성적 해부학과 생리학, 생식, 피임, 임신과 출산, HIV/AIDS, 성병, 가정 생활 및 대인 관계, 문화와 섹슈얼리티, 인권 역량 강화, 차별 금지·평등과 성역할, 성적행동, 성적다양성, 젠더기반폭력, 유해 사례

② 가치, 태도와 사회적 규범 : 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관용, 존중, 성평등, 인권, 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성적행동, 건강, 위험감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치, 태도, 규범(개인, 가족, 동료와 커뮤니티)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③ 대인 관계 및 관계 기술 : 성교육은 의사 결정, 주장, 커뮤니케이션, 협상, 그리고 거절 등 관련 기술의 획득을 촉진한다. 이러한 기술은 가족, 동료, 친구, 로맨틱 혹은 성적 대상에 대해서 더 낫고 생산적인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

④ 책임 : 성교육은 다른 사람에 대해 그들의 건강 상태나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존중, 수용, 관용, 공감하는 행동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성교육은 또한 성평등, 이르거나, 원치 않거나, 강제적인 성관계에 저항하기, 관계에서 폭력을 거절하기, 콘돔과 피임약의 정확하고 일관된 사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성관계의 실천을 독려한다.

그리고 주요 개념 6가지와 그에 따른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관계(가족, 우정, 사랑, 로맨틱 관계, 관용과 존중, 장기적 헌신, 결혼, 양육), 두 번째는 가치, 태도, 기술(성적 학습을 위한 가치, 태도, 원칙, 성적행동에 대한 규범과 동료 영향, 의사 결정, 커뮤니케이션, 거절, 협상 기술, 도움과 지지 구하기), 세 번째는 문화, 사회, 인권(섹슈얼리티, 문화, 인권, 섹슈얼리티와 언론, 젠더의 사회적 구성, 성적 학대, 착취, 유해 사례를 포함한 젠더 기반한 폭력), 네 번째는 인간 발달(성적 생식적 해부학과 생리학, 생식, 사춘기, 신체 이미지, 프라이버시와 신체 온전성), 다섯 번째는 성적 행동(성, 섹슈얼리티, 성적 생애 주기, 성적행동과 성적대응), 여섯 번째는 성과 재생산 건강(임신 예방, HIV를 포함한 성병의 위험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줄이기, HIV/AIDS 낙인, 치료와 지지)이다.

6. Overview of key concepts and topics

The tables below specify the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which can provide a comprehensive 'menu' for curriculum development. The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are drawn from evidence concerning curricula that have been demonstrated to change behaviours, as well as from practical experience.

Key Concept 1: Relationships Topics: 1.1 Families 1.2 Friendship, Love and Romantic Relationships 1.3 Tolerance and Respect 1.4 Long-term Commitment, Marriage and Parenting	Key Concept 2: Values, Attitudes and Skills Topics: 2.1 Values, Attitudes and Sources of Sexual Learning 2.2 Norms and Peer Influence on Sexual Behaviour 2.3 Decision-making 2.4 Communication, Refusal and Negotiation Skills 2.5 Finding Help and Support	Key Concept 3: Culture, Society and Human Rights Topics: 3.1 Sexuality, Culture and Human Rights 3.2 Sexuality and the Media 3.3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3.4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Abuse, Exploitation and Harmful Practices
Key Concept 4: Human Development Topics: 4.1 Sexual and Reproductive Anatomy and Physiology 4.2 Reproduction 4.3 Puberty 4.4 Body Image 4.5 Privacy and Bodily Integrity	Key Concept 5: Sexual Behaviour Topics: 5.1 Sex, Sexuality and the Sexual Life Cycle 5.2 Sexual Behaviour and Sexual Response	Key Concept 6: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opics: 6.1 Pregnancy Prevention 6.2 Understanding, Recognising and Reducing the Risk of STIs, including HIV 6.3 HIV and AIDS Stigma, Care, Treatment and Support

이 중 구체적으로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의 첫 번째 개념(관계), 두 번째 개념(가치, 태도, 기술)에 한해 살펴보겠다.

첫 번째, 관계

> 가족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다양한 종류의 가족 구조의 예를 통해 가족의 개념을 정의한다. • 세계에는 다양한 가족의 종류가 존재 (예 : 두 부모, 한 부모, 소년소녀가장, 후견인가장, 확대가족, 핵가족, 비전통적 가족) • 가족 구성원은 서로 다른 요구와 역할이 있음. • 가족들은 때때로 비록 그들이 원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돌봐준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 권한과 책임을 설명한다. • 가족은 역할과 책임의 관점에서 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 •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은 자녀의 의사 결정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 가족은 아동에게 가치체계를 가지게 하고 그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불평등은 종종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반영된다. • 가족은 아이들에게 가치를 가르치는데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질병은 가족의 구조, 능력, 역할과 책임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	---

> 우정, 사랑, 로맨틱 관계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친구를 정의한다. • 여러 종류가 친구가 있다 (예. 나쁜 친구, 좋은 친구, 남자 친구, 여자 친구) • 우정은 신뢰, 공유, 공감과 연대에 기초한다. • 관계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포함되고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장애 또는 건강 상태는 우정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랑을 주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인지한다. • 우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우정과 사랑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 • 성역할은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성평등은 건강한 관계의 일부이다. • 관계는 건강할 수도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학대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예이다.

> 관용과 존중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존중'을 정의한다. • 관용, 수용과 존중의 가치는 건강한 관계에서 중요하다. • 모든 인간은 고유하고 소중하고, 친구가 됨으로써, 관계에 있음으로써, 사랑을 줌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 사람을 놀리는 것은 해롭다.	편견, 낙인, 편협, 폭력, 거부 및 집단 따돌림의 개념을 정의 • 그것은 무례하고 상처를 주며, 누구를 건강상태, 피부색, 출신국, 성적지향이나 다른 차이점 때문에 괴롭히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 차이의 이유로 한 낙인과 차별은 인권 침해이다 • 모든 사람은 괴롭힘이나 왕따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장기적 헌신, 결혼, 양육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가족'과 '결혼'의 개념을 설명한다. •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	장기간 관계, 결혼과 양육의 주요 기능을 설명 • 법률과 문화는 결혼, 파트너십 구성을 형성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은 사회에서 조직되어진다.

<p>떤 사람들은 중매결혼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관계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거나 이혼으로 끝난다. • 다양한 가족 구조는 아이들의 생활조건, 역할,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 강제 결혼과 조혼은 유해하며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V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부모가 될 권리가 있다. • 육아는 책임과 함께한다. • 성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가 될 수 있다. 의도적/의도하지 않은 임신, 입양, 가정위탁, 인공수정기술, 대리양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그들 자신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모든 결정은 결과가 있다. • 의사 결정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 아동과 청소년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어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결정은 여러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 의사 결정은 결과가 있고 보통 이는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친구,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동료, 언론 등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소가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은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근원이 될 수 있다.
--	---

두 번째, 가치, 태도, 기술

> 성적 학습을 위한 가치, 태도, 원천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p>가치를 정의하고 평등, 존중, 수용과 관용과 같은 중요한 개인 가치를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가 가지는 강한 신념이다 • 가치와 신념은 삶과 관계에 있어서 결정을 지원해준다. • 개인, 동료, 가족과 지역 사회는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p>가치, 태도 및 성적 학습의 소스를 식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와 태도는 우리의 성적 학습의 근원이다. • 성별, 관계, 친밀감, 사랑, 성 및 생식에 대한 가치는 개인의 행동과 의사 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끼친다. • 문화적 가치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 성적행동에 대한 규범과 동료 영향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p>동료 압력을 정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압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영향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p>사회적 규범과 행동에 대한 영향을 묘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규범은 성적 가치와 행동을 포함한 가치와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 부정적 사회적 규범과 동료 영향은 자신 있는 행동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저지될 수 있다.

> 의사 결정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p>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의 예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p>	<p>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적용해 본다.</p>

> 커뮤니케이션, 거절, 협상 기술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p>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시험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은 부모와 자녀,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친구들 사이 등 모든 관계에서 중요하다. • 사람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 • ‘예’ 그리고 ‘아니오’라고 확실히 말하는 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신체 온전성을 보호해준다. 	<p>효과적이고 비효과적인 예를 시험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방식, 스타일을 사용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 자신감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이다. • 성역할은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협상은 상호 존중, 협력을 필요로 하고 종종 양쪽의 타협을 필요로 한다.

> 도움과 지지 구하기

레벨 1 (5세에서 8세)	레벨 2 (9세에서 12세)
<p>사람들이 서로를 도움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을 인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보호받아야 하고 지지받아야 한다. • 친구, 가족, 선생님, 사제, 지역사회 사람들은 서로 도움 수 있고 도와야 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은 도움과 지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p>특정한 문제와 그에 대한 도움원을 인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넓은 커뮤니티를 돕고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원천이 있다. • 어떤 문제는 학교나 지역사회 바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원치 않은 성적 관심, 괴롭힘, 학대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처에 신고되어야 한다.

IV. 결론

건강권은 개인이 성적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본문에서 소개한 규범과 문헌들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과 정보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모성사망, 낙태, 청소년 임신, HIV 비율의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공중보건의 정책 차원에서 공익에도 기여하지만 특히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권리로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인권 중 하나이다.

질의응답 및 토론 내용

속기_동아&임서영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정리_척 (본 상담소 인턴활동가)

- 사회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토론의 주제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질문도 좋고 본인의 얘기도 좋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개인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다. 특정 집단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발언은 스스로 자제 부탁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1. 학교에서 하는 스킨십 수위?

- 질문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스킨십을 한다. 그런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스킨십의 수위는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현이: 저희 센터에도 그런 교육 요청을 많이 받는다. 학교 안의 스킨십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들이다.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설득해야 하고, 서로 간에 합의된 선들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 그 안에서 연애나 데이트, 개인적인 스킨십이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 그리고 대중교통, 학교 등의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이 어디까지 허용가능한지 토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선을 넘으면 불편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가 모아지는 과정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직접 손잡기, 어깨에 손 얹기까지는 괜찮지만, 무릎에 얹기, 키스까지는 불편하다는 이야기 등이 나올 수 있다. 저희 센터 안에 동아리 아이들이 캠프를 갈 때도 이런 토론들을 한다. 공공장소에서 그 안에서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이 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 개인적인 스킨십을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 모임에서, 공공의 과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이나 에티켓을 같이 합의하면서 만드는 형태이다.

- 최규영: 수업에서 애들에게 공공장소 에티켓을 발표하게 한다. 그게 옛날처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잘 안 된다. 손이 딱 여기만 있어야 하는 것도 웃기고. 그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옛날처럼 이렇게 (정해진 답을 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이 어른들이 아니라, 그 또래들의 의견을 더 크게 느낀다. 대중강연이라면, 아이들 몇 명에게 어떤 커플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 (아이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어떤지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좋다.

2. '창녀'라고 소문내는 구남친?

- 질문자: 학교 교육이나 사회문제를 게임이나 영상으로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에 진로문제로 시작한 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놀러 온다. 그러다 이제 자기 진로 얘기와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눈다. 어떤 친구가 자기가 어떤 친구와 섹스를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창녀'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한다. 이미 헤어졌는데.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들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네 잘못이 아니야', '사회구조가 이상한 거야'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다. 책을 읽어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청소년들이 성인이라 사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섹스를 한다고 했을 때, 피임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끝이 안 좋다. 권력관계 때문에 애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위험할 거 같은데" 라고 말하면,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박현이: 고등학교 애들을 상담하다보면, 남자아이들은 아동이나 성관계에 대한 질문을 끊임 없이 하고, 여자아이들은 성에 대한 부분들, 성관계 경험 후에 티가 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성별 이중규범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창녀'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것은 엄격히 성희롱이다. 남자 아이들은 사귀자마자, 사귀지 일주일 만에 '키스하자', '잘래?' 등의 표현을 한다. 여자아이들은 이 정도의 스킨십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징계를 받은 그 남자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그 남자아이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에 '그 남자아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반성을 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든, 징계를 통해서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다. 그 남자애도 본인이 상당히 잘못된 문제고 이런 걸 인식하도록 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질문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는?

- 치리: (본인도)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일단 그럴 때는 학교라는 1차 제재 기관이 없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냥 바로 신고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조언한다고 해서 될 것도 없다. 물론 경찰이 쓰레기일 수 있다. 저는 경찰과 이야기 하고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다. 그럴 때 이야기 해주시면 된다. '네 잘못이 아니라 그 경찰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되지, 너무 고민된다고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 박현이: 더불어 저는 상담을 받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한국성폭력상담소나 저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나. 그 친구의 힘든 상황도 살펴보고 그 친구가 신고까지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지. 그리고 남자애들이 '창녀'라고 할 때 속상하고 힘든 게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토로와 그것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규영: 저는 청소년과 성인이 사귀는 경우를 솔하게 봐왔다. 청소년이 직장인 남성과 만나거나, 남자 고등학생이 직장인 여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관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돈을 쓰니까.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너무 편하고. 그 친구는 학생의 생활이 아닌 것. 탈학교 학생? 학교 밖의 청소년? 탈학교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학생이 성인을 만나면 생활리듬이 완전히 성인, 어른의 생활시간에 딱 맞춰진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대학생들 만나도 대학생에 맞춰지는 것.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똑같은 학교에서 만나는 것인데, 의식수준이 다르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닌데, 어른과 학생이 만나면 그게 딱 어른에 맞춰지고, 첫 연애가 그러면 두 번째 연애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연결고리를 언젠가 끊어야 한다. 돈 안 써도 되고, 시키는 거 하면 안락하게 해주고. 사실은 하나도 안락하지 않은 건데. 자기의 성적결정권을 생각할 경지가 안 되는 약자가 되는 것이다. 한창 연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걸 인지를 하나? 그렇지 않다.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점점 비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조금 조금씩 얘기를 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헤어지라는 말은 절대하면 안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기 때문에. '네가 만나면서 불편한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다 보면 허심탄회하게 힘든 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냥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나는 이런 점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남자가 군대를 가거나 하지 않는 한 끊어지는 게 정말 힘들다. 위험한 관계다.

- 치리: 계속 다시 등장해서 죄송하다. 저는 그 관계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 문제적인 것 같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나이권력과 젠더권력이 중첩된다. 너무 어려운 문제다. 제 주변에도 되게 이상한 직장인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솔직히 헤어졌으면 한다. 그렇지만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재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신고할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 김서화: 어릴 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런 일들은 많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을 닫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의 연애관계를 재단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 아예 입을 닫아 버려서 무엇이 위험한지 모르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관계의 불평등, 위험함을 사람들이 단순하게 잘라버린다. '나이 차이' 사실 어디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오는지, 무엇이 현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 상대방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친구도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나이, 돈, 직장 이런 식으로 확 치는 게 아니라 사건에서 일들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3. 포르노 규제?

- 질문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야동을 봤던 사람이다. 마음속에 결핍이 있고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포르노가 이제는 VR이라고 가상현실 콘텐츠로 나오게 되면 현실감과 몰입감을 줘서 포르노에서 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다. 포르노는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포르노가 VR등의 콘텐츠로 제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고 싶다.

- 치리: 강간에 대한 얘기가 많다. 저는 포르노가 강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간이 없고 남성중심적이지 않은 포르노를 상상하기 어려운데, 포르노를 여기서 빼내오는 게 더 필요할 거 같고, 여성의 성욕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포르노 때문에 범죄가 일어 난다고 보다는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포르노가 있기 때문에 강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수행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것부터 교육으로 깨야한다고 생각한다.

- 재재: 포르노를 근절하는 방법은 보지 않는 것이다. “포르노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봉 뜬 말일 뿐이고, 볼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며, 욕구 해소의 유효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성표현물들이 많이 있다. 여성들이 대상화된 포르노가 아니라, 여성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성표현물을 발굴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이 무엇인지 언어화하고 표현하는 작업들이 같이 가야할 것 같다.

- 최규영: 포르노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고, 걸그룹 등은 거의 포르노와 유사하지 않나. 광고에 나와서 아저씨를 유혹하는 내용이나 이미지들이 그것이다. 학생들이 걸그룹의 화장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 정책 등이 필요하다. 좀 더 큰 틀에서 해야 한다. 포르노는 그 아류이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성문화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랩 가사 중 일부는 여성을 대상화시키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노래를 늘 듣고 부르고 하는 그 자체가 일상이 포르노인 것이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을 못 듣게 해야 하는데 점점 더 센 것을 원하는 세태가 되어가고 있다. 상업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고 최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분별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정책적 발상을 해야 한다. 언어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폭력적인 노래를 매일 듣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학부모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박현이: 방금 얘기한 것들에 동의를 하고, 덧붙이자면 아이들이 아동 속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에게 성교육의 기회가 된다. 성기 크기나, 성기 중심적인 아동의 행위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섹스를 할 때는 상대가 있어야 하고 동의나 합의, 협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성적 표현물을 발굴했으면 한다는 말에 동의하고, 포르노 없이 즐길 수 있는 욕망의 실현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아동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성을 즐길 수 있으려면 다른 성적 표현물, 낭만적 소설이든 영화든 다양하게 보면서 성적 시나리오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이 아동을 보는 건 심각하다. 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과하고, 그에 대해 판단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없다. 그걸 보고나면 무비판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초등생 학부모들이 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 아예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운동.

4. 단톡방 성희롱?

- 질문자: 여자동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특정 동아리 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언급하면서

‘먹고 버린다’하는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제일 처음 반응은 ‘캡처본을 파악(확보)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성희롱 범죄의 심각성을 알아보자’였다. 그런데 같이 얘기를 하던 여자 동기들이 ‘왜 그런 걸 굳이 하느냐, 그러다고 뭐가 달라지느냐’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어디에나 있을 텐데 그러다고 뭐가 달라지느냐’하는 반응이 있었고, ‘자기가 말했다는 얘기가 돌면 나만 이상한 애가 되니까 말하지 말라’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차피 알아본다고 해도 단톡방은 순식간에 폭파될 거고,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신고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고발하는 것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저희 과거 폐쇄적인 구조여서 나중에 선배들이 다 직장선배가 되고 한다. 그래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어디서나 있는 문제라는 입장. 신고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전달했다. 피해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을 그럴 수 있지만, 이건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런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데 덮을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자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 재재: 카톡 단톡방 사건 이런 식으로 대학 내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질문해주시는 분이 갖고 계신 어려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다만 그 계 공동체 내에서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공론화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딱 문제해결의 결과가 피해자든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이상향에 가깝지 않더라도 공론화의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 문제화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된 당사자가 움직여야 하는 사안들이 있을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리인을 세워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면서 정작 피해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되는 과정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혼자서 희생양, 방패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말고, 구성원들이 함께 이야기 하면서 구성원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

5. 성인대상 성교육?

- 질문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발언들 중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성인 대상의 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저희가 부족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도 이런 (성교육 관련) 교육은 전혀 없다. 선생님은 (성교육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인식의 정도도 정말 다양하다. 저도 교회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 대학교 엠티 때 문제라든지, 썸관계를 가졌던 합의로 한 줄 알았지만, 여자는 성폭력이라고 이해했지만 남자의 말은 완전히 다르기도 하다. 대학사회에서 굉장히 낮은 성감수성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카톡방 문제, 그리고 ‘강남역’ 사건 등이 이야기 되는 것들을 봤을 때, 성인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나부터도 이런 교육을 가장 받고 싶은데, 벽에 항상 부딪히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여

자들도 다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느 위치에서 교육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무섭기도 하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묻고 싶다.

- 김서화: 제가 잠깐 2년 정도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일을 했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10000% 공감한다. 대학에서 엠티 철이 되면 모든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상담소가 비상이다. 그 전에 온라인에 있는 거 다 뿌리고, 교육하고 난리다. 모든 대학에 상담소가 있지만, 이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도 몇몇 큰 대학들뿐이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들도 기존에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이 발생한 대학들이다. 대부분은 그 대학에서 받거나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나라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뿌리는 것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대학 내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를 찾고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만약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내상담소 등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면 비상시적으로만 들어질 수도 있다. 의지가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학과별로 사람을 모아서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으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 책을 보고, 경험을 나누기. 서로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작게나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 최규영: 4학년 졸업을 하고 선생님이 되시면, 저희 <아하!교사회>가 있다. 오시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신데 함께하자.

- 박현이: 대학생이면 저희 센터도 그렇고 성교육자원활동가, 성폭력상담원자원활동가 모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하시면 어떤가.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곳에 가시면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한국성폭력상담소나 아하성문화센터 등에 참여하시는 것이 어떤가.

6.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 질문자: (성폭력예방교육 등) 강의를 나가다보면, 지적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몇 회차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1회차로 끝내달라는 경우가 많다. 1회성으로 원한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최규영: 지적장애인이더라도 수준이 다르다. 정말 취약하다.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 교재는 유치원 ~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것들을 사용했다. 1회를 해달라고 해도 많은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활동가: 지적장애인의 연령과 상황이 중요하다. 성인으로서 자립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에 있다면, 성인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할 것이다. 초등학교생과 성인의 생활환경은 다르다. 아까 '창녀'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친구도 그렇고, (모두) 관계의 문제다. 지적장애

청소년들에게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성인남자들이 지적장애 청소년·아동·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주 손쉽게 성적착취를 하는 것이다. 연애의 형태로 위장을 해서. 이분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없다. 지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 그리고 성인들도 속는다.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위장할 수 있다. 근데 그 모습에는 진위가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성폭력 아닌 성폭력을 당하는 것. 이 당시의 장면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게 폭력이다'라고 느끼는 건 헤어지고 나서다. 헤어질 때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성적 목적으로 다가왔구나 하는 게 다 보이니까.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해주셔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단회기 교육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적장애인들에게 한계는 있다, 어떤 게 효과적인 건 없어요. 효과를 위해 조금 더 교육 회기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한회기로는 정말 힘들다.

아까 카톡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 생긴다. 가해자의 가해정도가 심해질 것이고, 가해강도도 높아질 것. 과거 특수해서 졸업해서 직장으로 가게 되면 직장선후배로 갈 것 같아서 쉽게 신고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직장내성희롱으로 이어진다. 그 가해자의 행동이 전혀 제지가 안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용기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여성들의 연대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더 심각해진다. 우리가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작은 변화더라도 계속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생애주기별 성교육?

- 질문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성교육표준안 나오고 나서 인권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성교육 표준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다. 최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체육... 각종 시간을 쪼개서 15시간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부에서 나왔던 지침을 개별 일선 교육청에서는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달방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성교육표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교육이 되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하고, 교육청이 어떤 것을 권고하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지. 선생님, 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여쭙보고 싶은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생애주기에 맞는 성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 최규영: 아까 지적장애인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수준에 대해 이야기한 게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아니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시아성학회에서 홍콩대표로 오신 분들이 지적장애인 대상자들의 성교육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원을 그리고 나와 가족.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자기 몸의 보호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알려주시더라.

생애주기에 맞는 성교육을 하자는 게 교과서에도 나온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평생에 맞는 성교육을 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거의 담고 있는데, 교육부 이거는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썼는지는 저도 정말 묻고 싶은

데... 많은 교과서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을 하자.' 이렇게 나온다. 다만 책이 그렇게 나오면 뭐하나, 시간이 없는데. 그 표준안도 표준안이 나오면 뭐하나, 표준안을 교육할 시간이 없다.

- 박현이: 저도 정말 제안을 해서 이뤄지면 좋겠다. 저는 정규교과가 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중학교에서는 2학년,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면, 아이들이 생애주기별로 적어도 3년은 알차게 성교육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 여가부에서 성인권교과서가 만들어졌다. 그건 성교육표준안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개 학년에 성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러려면 학교에 전문자원이력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성인권교육은 지역사회에 있는 성문화센터나 체험형성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보건교사 선생님들을 활용을 해서 성인권교육과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싶다. 지금은 교육부와 여가부와 그런 한 개 학년 정도씩은 지원이 되면 어떨까 싶다.

또 하나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학교 안에서는 엄청난 과제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학생 간, 또래 간 성폭력이라든지, 10대들 사이의 연애를 통한 성폭력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전문가와 결합해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학교는 '대체 어디에 연락할지 모르겠다.'의 경우가 많다. 정부에 있는 교육지원청별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성폭력상담소, 성문화센터, 교육청, 해당교과가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만들자.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교육도 하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협업하고 얘기하는 테이블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자. 또한 전문가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나 경찰이나 네트워킹을 구성하자. 성교육과 성문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8. 군대내 성교육?

- 질문자: 생애주기별이라고 얘기해서 손을 들었다, 저는 군대에 갔다 왔다. 군대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대문화는 성매매를 빼놓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군대에서의 성매매를 너무 많이 봤다. 여성을 대상화하고. 제대해서 나오면 거기에 고정된 시각으로 또 성을 사러 간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훨씬 더 강간이나 성폭력 비율이 높은 게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거나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전부 군대를 가야하는데, 생애주기별 성교육을 생각한다면 군대내 성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치리: 군대내 성교육이 없나?

- 질문자: 군대에서 정신교육이라고 해서 가끔 하긴 하는데, 보통 정훈장교가 한다. 그런데 그 정훈장교가 성매매를 한다.

- 김서화: 군대에서의 성교육도 필요하지만, 군대가 생산해내는 문화나 담론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인 성적 문화와 담론들을 끊임없이 재생산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직장문화가 되고 가족문화가 된다. 남성성의 점등처럼 계속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대내 성폭력도 물론 효율적

인 것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한국이 계속해서 군대문화를 재생산 하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니지만, 생애주기에 언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자'라는 칼럼을 썼지만, 사실은 성인들. 그리고 만약 군대라면 정훈장교가, 학교라면 선생님, 대학이라면 교수가 그런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애주기별로 누가 더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면 그런 (권력과 권위를 가진) 쪽에서 먼저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나 역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뒤돌아서 깜짝 놀란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사이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면)이 있다면 비장애인이 먼저 배우고 성교육을 해야 한다. 사회전체가 '무'의 상태이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쪽에서 먼저 배우고 교육시키라고 말해야 한다.

9. 교사들의 성교육 중요도 인식 개선?

- 질문자: 저는 서울에서 초등교사를 하고 있다. 성교육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 저도 공감한다. 초등교육에서 담임과의 시간이 굉장히 많다. 따로 교과를 배정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와의 시간 속에서 성평등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많은 초등교사가 나를 포함해서 성교육을 잘 받아본 적이 없고,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한지 교사들이 알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단 교사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발언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교대교육 커리큘럼에 성폭력이나 성평등에 관련된 수업을 필수로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0. 지적장애인 대상 성교육 회기 연장?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활동가: 저는 고양여성민우회 파주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체 비방은 아니고 단체자랑을 하게 될 것 같다. 장애 교육도 5회기에서 25회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엔 1-2회기를 제안 받았다. 보통 그런 제안을 받을 때는 학교에서 성문제가 있거나 성행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이 요구하신다. 학교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관계 교육 위주로 하고 있다. 일선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신다. 장애교육의 경우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수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가 파주에 본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군대성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군대성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은 지리적 문제도 있다, 군대가 정말 외곽에 있다. 파주이긴 하지만, 파주 내에서도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야 한다. 군대 성교육을 가는 것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 차량운전을 직접 해야 하거나, 강사료도 턱없이 부족하다. 두 시간 교육에 3만 5천원. 성폭력이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에 동의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긴 하지만, 과연 지속이 될까. 군대가 돈이 제일 많은 조직이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4만 5천원 주는 곳도 별로 없다. 당연하게 무료를 요구한다.

11. 건강한 성표현물?

- 질문자: 포르노에 대한 우려를 말씀 드렸었는데, 성건강 성표현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건강한 성표현물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 치리: 그걸 여기서 묻는 건 솔직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저도 상상하기 어렵다. 저 스스로도 여성이 주체가 되고 여성이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거나 건강한 성문화를 질문하는 건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 레즈비언 포르노를 봐도 그냥 남자시선에서 찍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 별로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고 보통 남성의 시선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연결해서 '아 이런 게 정말 좋은 성표현물이죠'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12. '성폭력예방교육'이라는 명명에 대한 문제제기?

-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활동가: 우리가 '성폭력예방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인가 싶긴 하다.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가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 성폭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고, 성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공포심이 크다. '성폭력예방'이라는 표현 자체를 바꿨으면 한다. '성인권존중교육'이라던가 용어사용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성폭력예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너무 싫다고 느낀다. 입에 배고 나니 잘 안 바뀌긴다. 의식적으로는 '타인의 성인권 존중' 이렇게 하다가도 무의식중에는 '성폭력예방교육'이라고 말한다. 저만 이런 느낌을 갖는 건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 재재: 이게 성폭력, 폭력이라 명명하는 것이 문제인가. 성폭력예방교육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이야기 할 것들이 굉장히 협소해진다. 이름을 좀 바꿔보자 생각해서 '인권감수성교육', '성인권교육',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폭력예방교육'이라고 했을 때 폭력을 예방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나 가해자가 행동을 하지 않거나 조심하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서 예방의 효과를 얻자는 차원의 이야기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느낀다. 한 편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이라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은데, 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폭력이라는 용어가 오염되긴 했지만, 그 오염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폭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중요하다.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범죄와 동일시되고 법적으로 모든 해결과정이 있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 남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게 된다. 일상에 스며있는 것들이 폭력으로 알아채고 명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활동가: 교육의 효과적인 면을 볼 때, 예방교육이라고 하면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성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형사법상에서만 등장했으면 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이라는 용어자체를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하는 바람이 있다.

- 사회자: 지금껏 나온 얘기들에 많은 공감을 한다. 두 시간 반 동안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지금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성/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을 또 다른 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O 경직! 라운드테이블 - 성교육을 말하다>

발행일 2016년 8월 23일
발행인 이미경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편집인 노선이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전화 (사무) 02.338.2890~1
(상담) 02.338.5801~2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www.sisters.or.kr
SNS 블로그 stoprape.or.kr
트위터 @stoprape
페이스북 페이지 /ksvrc1991
후원계좌 우리은행 441-04-107528 (사)한국성폭력상담소